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9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12호)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69호)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2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09호)	1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12호)	3
3.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69호)	5
4.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20호)	6
II . 주요 내용별 검토	8
1. 상병수당 의무급여화	8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7. 30.
- (3) 회 부 일 : 2024.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

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30.
- (3) 회 부 일 : 2024.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범계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2.
-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4.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3.
-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외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덧붙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병수당 의무급여화

가. 개정안의 내용

□ 4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 서영석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이수진의원안은 직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의 66.7%이상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며, 국고에서 상병급여 지급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
- 박범계의원안은 10일 이상 연속 입원시 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 김태년의원안은 지급기준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함.

현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

현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립 등) ① (생략)	립 등) ① (현행과 같음)	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②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상병수당 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7. ~ 10. (현행 제6호 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39조의3(질 병휴가 급 여 지급사 업에 대한 지원) 공단 은 「근로 기준법」 제62조의2

현	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제3항·제5항에 따라 질병휴가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소득의 상실이 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라 질

현	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u>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주소 등자의 기준, 질병·부상의 범위,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u> <u>②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u> <u>③ 상병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월별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u>	<u>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월별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u>	<u>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③ 그 밖에 상병수당의 대상,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	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말 한다)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이 조 에서 “소득 일액”이라 한다)에 비 례하여 지 급한다. 이 경우 1일당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상병급여 일액”이라 한다)은 소 득일액에 1 00분의 66.7 을 곱한 금 액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병 급여일액이 「최저임금 법」 제5조 제1항에 따 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에 8을 곱	한다)에 비 례하여 지 급하되, 가 입자 전원 의 기준소 득을 평균 한 금액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 다. ④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 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현	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u>한 금액(이</u> <u>하 이 조에</u> <u>서 “최저소</u> <u>득 일 액” 이</u> <u>라 한다)보</u> <u>다 적으면</u> <u>최저소득일</u> <u>액을 상병</u> <u>급여일액으</u> <u>로 한다.</u> ⑤ <u>국가는</u> <u>상병급여를</u> <u>지 급 하 기</u> <u>위하여 필</u> <u>요한 비용</u> <u>의 100분의</u> <u>50을 국고</u> <u>에서 공단</u> <u>에 지원한</u> <u>다.</u> ⑥ <u>사업주는</u> <u>상병급여의</u> <u>신청 및 지</u> <u>급을 이유</u> <u>로 근로자</u> <u>를 해고하</u> <u>거나 그 밖</u> <u>의 불리한</u> <u>처우를 하</u> <u>여서는 아</u>		

현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u>니 되며, 상</u> <u>병 급여 의</u> <u>지급기간과</u> <u>그 후 30일</u> <u>동안은 해</u> <u>고하지 못</u> <u>한다.</u> <u>⑦ 그 밖에</u> <u>상병수당의</u> <u>구체적 지</u> <u>급기간, 지</u> <u>급금액 및</u> <u>지급절차</u> <u>등에 필요</u> <u>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u>장제비</u> , <u>상병수당</u> ,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제50조(부가급여) ----- ----- ----- ----- ----- ----- ----- ----- ---- <u>장제비</u> ----- ----- ----- -----	제50조(부가급여) ----- ----- ----- ----- ----- ----- ----- ----- ---- <u>장제비</u> ----- ----- ----- -----	제50조(부가급여) ----- ----- ----- ----- ----- ----- ----- ----- ---- <u>장제비</u> ----- ----- ----- -----	제50조(부가급여) ----- ----- ----- ----- ----- ----- ----- ----- ---- <u>장제비</u> ----- ----- ----- -----

현	행	서영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범계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수 있다.		-----.	-----.	-----.	-----.

나. 검토의견

□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임¹⁾.

- 현행법 제50조²⁾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³⁾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부가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⁴⁾

1)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및 시사점 검토, 2017.

2)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4) 참고로, 공무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봉급의 50~70%를 지급받을 수 있음.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상병수당에 관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OECD에 가입한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주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의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 >

	최저기준 (제102호 조약)		하위기준 (제130호 조약)		상위기준 (제134호 권고)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 인구기준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 인구기준	피용자 기준	경제활동 인구기준
적용범위	50% 이상	20% 이상	100%	75% 이상	100%	100%
급여기간	모든 기간 단, 최저 26주 이상		모든 기간 단, 최저 52주 이상		모든 기간	
급여수준	이전 소득의 45% 이상		이전 소득의 60% 이상		이전 소득의 66.7% 이상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⁶⁾,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단’ 등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5) 김경선,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2023. 11. 27.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상병수당 의무화를 권고하였으며, 2012년 3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병휴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일반회계 사업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에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4개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이 추가되었고,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에 4개 지역(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이 추가되었음.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 (대상지역) 총 14개 지역('24.7월 기준)

- * 1단계('22.7~)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6개 지역)
- 2단계('23.7~) :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4개 지역)
- 3단계('24.7~) : 전북 전주,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4개 지역)

○ (대상자) 만 15~65세 미만 취업자* (2단계·3단계 소득 하위 50%** 추가 적용)

- * (취업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
- ** (소득기준)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단계·3단계 지역)

○ (보장수준) 日당 47,560원 ('24년 최저임금 60%), 최대 120일~150일

○ (모형구분) ①근로활동불가모형 ②의료이용일수모형 운영중

- * (모형구분)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최대보장기간(120일~15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
- * (근로활동불가모형)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지급
- * (의료이용일수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지급

구분	1단계('22.7월~)			2단계('23.7월~)		3단계('24.7월~)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소득하위 50%		
모형구분	근로불가	근로불가	의료이용	근로불가	근로불가*	근로불가
대상지역	부천,포항	종로,천안	순천,창원	대구달서,안양	용인,익산	전주, 원주, 충주, 홍성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7일(재택외래 없음(입원))	7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150일

* 용인, 익산은 '24.10월부터 의료이용일수모형→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전환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상병수당 지급대상·기준, 지급방식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바⁷⁾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시행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 및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39조의3에서는 질병휴가 급여 지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⁸⁾ 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7)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는 소득기준, 요양 방법(근로활동불가모형, 의료이용일수모형), 대기기간 (3~14일), 최대보장기간(120일~150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중에 있음.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24)

다.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의견

□ 보건복지부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상병수당 관련 법률개정은 운영방식, 재원조달, 기존 제도와의 관계, 수급요건, 급여체계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2022~2027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유관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운영방안 마련 후 개정 검토 예정임.
-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김태년의원안)에 대해서는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 제도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재원 마련 방식, 세부 지급기준 등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논의되어야 함.

- 한편, 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급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⁹⁾에도 부합하지 않음.

□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병수당 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하여 상병수당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함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주목적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두는 것이 합당하며,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그 대상 및 성격에 맞는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03

9)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